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재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633

발의연월일 : 2019. 9. 24.

발 의 자 : 김재경・김석기・강석호
권성동・유의동・김무성
홍철호・경대수・김선동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,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주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판매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,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상품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음. 또한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.

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, 다단계판매업은

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,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,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1항·제2항 및 제15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”를 “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이 경우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,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(다단계판매원이”를 “[다단계판매원이”로, “서면”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,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]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문판매자등의 계약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)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방문판매원등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. 다만,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3. ~ 11. (생 략)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7조(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) ①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. ----------. 3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이 경우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

	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,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다단계판매원) ①·② (생략)	제15조(다단계판매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·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	③ ---------- ----------

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(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	----------[다단계판매원이--------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-----포함한다]-----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